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 1 차 총무위원회 (2013. 10. 10)

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안 (수정예산안 포함)

검토보고서

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용모 의안번호 제2013 - 79호

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안 [수정예산안 포함] 검토보고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. 10. 02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13. 10. 02.

2. 예산안 규모(군 전체) - (예산서 P9)

가. 총 괄 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	기 정 액	증 감	증감률
계	483,565,015	452,347,274	31,217,741	6.90
일반회계	407,056,485	388,759,293	18,297,192	4.71
특별회계	76,508,530	63,587,981	12,920,549	20.32

- **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**는 기정 예산액 대비 312억 1,774만 1 천원증액(6.9%)된 4,835억 6,501만 5천원으로 편성.
 - ▶ **일반회계 예산액은** 4,070억 5,648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82억 9,719만 2천원(4.71%)이 증액.
 - ► 특별회계 예산액은 765억 85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9 억 2,054만 9천원(20.32%)이 증액.

나. 세입예산(일반+기타특별) - 예산서 P10 (단위:천원)

, ,				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율
합 계	442,019,254	420,697,463	21,321,791	5.07
지 방 세 수 입	18,245,000	18,245,000	0	0.00
지 방 세	18,245,000	18,245,000	0	0.00
보 통 세	17,987,000	17,987,000	0	0.00
지난년도수입	258,000	258,000	0	0.00
세 외 수 입	63,912,754	46,107,343	17,805,411	38.62
경상적세외수입	6,258,806	6,256,806	2,000	0.03
재산임대수입	104,263	104,263	0	0.00
사용료수입	841,533	841,533	0	0.00
수수료수입	1,079,400	1,079,400	0	0.00
사 업 수 입	991,700	991,700	0	0.00
징수교부금수입	384,240	384,240	0	0.00
이 자 수 입	2,857,670	2,855,670	2,000	0.07
임시적세외수입	57,653,948	39,850,537	17,803,411	44.68
재산매각수입	112,800	112,800	0	0.00
잉 여 금	42,119,326	26,163,832	15,955,494	60.98
이 월 금	2,861,320	1,414,903	1,446,417	102.23
전 입 금	10,346,755	10,356,755	△ 10,000	△ 0.10
융자원금수입	60,529	60,529	0	0.00
부 담 금	35,000	35,000	0	0.00
기 타 수 입	1,968,218	1,556,718	411,500	26.43
지난연도수입	150,000	150,000	0	0.00
지 방 교 부 세	203,701,203	201,725,994	1,975,209	0.98
재 정 보 전 금	9,044,000	8,275,000	769,000	9.29
보 조 금	147,116,297	146,344,126	772,171	0.53
지 방 채	0	0	0	0.00

다. 세출예산(일반+기타특별) - 예산서 P23 (단위 : 천원)

	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<u>`</u>
부 서 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442,019,254	420,697,463	21,321,791	5.07
총 무 위 원 회	187,932,399	183,098,307	4,834,092	2.64
산업건설위원회	253,128,736	236,641,037	16,487,699	6.97
의회운영위원회	958,119	958,119	0	0
기획감사실	13,223,050	11,302,463	1,920,587	16.99
주민생활지원실	62,957,381	63,551,179	△ 593,798	△ 0.93
행 정 과	50,339,111	50,240,110	99,001	0.20
창조정책과	17,207,231	12,930,646	4,276,585	33.07
재 무 과	3,341,985	2,908,985	433,000	14.88
민원봉사과	542,079	521,600	20,479	3.93
안전총괄과	14,174,455	13,785,934	388,521	2.82
경제과	22,985,679	22,543,234	442,445	1.96
문화관광과	11,923,511	11,798,911	129,600	1.10
산림녹지과	18,218,218	18,897,955	△ 679,737	△ 3.60
녹색환경과	25,561,007	25,388,067	172,940	0.68
건설과	45,094,567	44,452,216	642,351	1.45
도시건축과	22,712,117	22,554,983	157,134	0.70
농업기술센터	70,665,028	66,719,433	3,945,595	5.91
보 건 소	11,011,227	10,965,089	46,138	0.42
상하수도사업소	32,991,914	23,095,964	9,895,950	42.85
체육청소년사업소	7,662,010	7,637,010	25,000	0.33
읍 면	7,828,808	7,828,808	0	0

○ **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** 총 1,879억 3,23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기정 예산액 대비 48억 34백만 92천원 (2.64%)이 증액 편성.

3. 부서별 검토의견

□ 기획감사실(예산서 P73~74)

<세입예산> 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11,852	12,186	△ 334	2.74
도비보조금	11,852	12,186	△ 334	

<세출예산> 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13,223,050	11,302,463	1,920,587	16.99
군정기획조정	2,394,100	2,374,934	19,166	
재무활동	2,700,000	2,000,000	700,000	
예비비	8,068,110	6,866,689	1,201,421	

○ **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19억 2,058 만 7천원이 증액 (16.99%)된 132억 2,305만원으로 편성.

◇ 연구용역비 / 증 19,500천원(p73)

○ 감악산권역 관광자원화 방안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임. 거창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(도시건축과), 감악산 풍력단지(경제과),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(SLR) 관측국 설치(창조정책과), 거창 창포원 조성(녹색 환경과)사업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감악산권역 마스터플랜 수립

◇ 반환금 / 증 700,000천원(p74)

○ 도비보조금 사용 후 반납 액 증가

□ 주민생활지원실(예산서 p77~90)

<세입예산> 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39,726,142	40,409,941	△ 683,799	△ 1.69
국고보조금 등	30,744,331	31,624,566	△ 880,235	
도비보조금	8,981,811	8,785,375	196,436	

○ **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6억 8,379 만 9천원이 감액(1.69%)된 397억 2,614만 2천원으로 편성.

<세출예산> 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62,251,964	62,862,063	△ 610,099	△ 0.97
주민생활지원	1,309,991	1,200,014	109,977	
장애인복지증진	6,255,304	5,967,942	287,362	
노인복지증진	25,067,938	24,944,966	122,972	
국민기초생활보장	10,787,246	10,667,515	119,731	
주민복지증진	864,117	864,717	△ 600	
여성복지증진	1,193,742	1,136,116	57,626	
아동복지증진	15,939,670	17,246,837	△ 1,307,167	
의료보호기금	705,417	689,116	16,301	

○ **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6억 1,009만 9천원 이 감액(0.97%)된 622억 5,196만 4천원으로 편성.

◇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기경정예산 안은 국도비 보조시업 확정 또는 사업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을 증감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음.

◇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상금 / 중 40,000천원(p77)

- 자산 취득비 32,000천원 :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치단체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을 복지전달체계개편 시범사업으로 권역 별 센터 설치에 따른 차량과 장비 구입
- 복지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8,000천원 : 사회 복지사업법 제15조
 - ※ 차량 사후관리와 안전, 정수물품 등 사전절차 확인필요

◇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/ 중 20,377천원(p77)

- 아동인지능력향상,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, 장애인보조기렌탈,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, 아동청소년극교육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: '13년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
- '1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와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분야에 1,457천원과 1,920천원을 각각 증액함.

◇ 보훈단체 지원 / 증 49,000천원(p77)

- 위천면 3.1운동 기념탑 부지 224㎡ 매입비 중 부족액 증액 편성
- ※ 공유재산관리, 토지 예상가격 등 사전 절차이행여부 확인이 필요

◇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/ 증 600천원(p78)

-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(12기) 및 안내판설치(1개소) :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지원에 관한 조례
-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1개소 도비 확정내시

◇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 / 증 10,368천원(p78~79)

-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·보급 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 제공 / 관공서, 복지시설 단순 업무보조, 청소도우미 등 38명 : 장애인복지법 제21조
- 국·도비 추경 시 사업량이 32명에서 38명으로 6명 증가되어 국·도·군비 증액편성

◇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/ 증 20,287천원(p79)

- 읍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지역 사회복지행정 참여기회제공 및 소득증진에 기여 : 장애인복지법 제21조
- 사업량 12명에서 15명으로 3명 증가되어 국·도비, 군비 증액

◇ 공동생활 가정운영 예산조정(p79)

- 두레누리, 사랑의공동체쉼터 등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원
- 도비 증 3,040천원, 군비 감 3,040천원

◇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/ 증 162,100천원(p79)

- 중증장애인의 생활시설 입소로 장애인의 주거 안정도모와 보호자 의 부담 경감을 위해 월평빌라 종사자 인건비, 시설운영지원
- 도비변경으로 증액편성
- ※ 군비부담 비율 확인 필요

◇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/ 감 1,844천원(p80)

-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전등리모컨, 이동전화요금 등 지원
- 도비 지원액 변경으로 감액편성

◇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/ 증 96,451천원(p80)

-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직장인으로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해 삶의 질을 높이고,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
-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
 - 인건비: 3명(시설장, 교육훈련교사, 생산판매기사), 23,966천원
 - 운영비 : 업무추진비, 복리후생비, 시설운영비 등 19,485천원
 - 시설비 : 완성품 적재창고(파이프, 천막) 495m² 건립, 53,000천원
- ※ 인건비 지원 근거와 인력운영계획, 적재창고 예산이 증가된 사유 설명이 필요

◇ 장애아동 심리상담 프로그램운영 예산조정(p80)

○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

◇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/ 증 68,000천원(p81)

- 법인 및 위탁운영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지원수당, 명절격려수당
- 부족분 도비, 군비 증액편성

◇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/ 증 54,972천원(p81)

-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에 따른 장비보강을 위해 사업을 추진
 -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 : 100,000천원
 - 인애노인요양원 소방안전시설 확충 : 2,300천원
 - 인애노인의 집 소방안전시설확충 : 18,000천원
 - 참사랑노인요양원 소방안전시설 확충 : 14,292천원
 - 베푸는 공동체 소방안전시설 확충 : 40,680천원 (당초 120,300천원 변경 175,272천원 / 증 54,972천원)

-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인운영시설인 참사랑노인 요양원과 베푸는 공동체 추가 지원
- ※ 군내 모든 복지시설의 소방안전시설 자체점검 확인이 필요

◇ 생계 급여 / 증 49,969천원(p81~82)

- 기초수급자에게 최저생계 지원을 위한 현급급여 지급 :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8조, 제9조
- 국·도비 변경으로 증액편성

◇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/ 증 52,075천원(p82)

-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50%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, 제8조
- 국·도비 변경으로 증액편성

◇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/ 증 17,687천원(p82)

-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50%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자활 센터에서 가정까지 직접배달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
- 국비 변경으로 증액편성

◇ 주부모니터 운영지원 / 감 600천원(p81)

- 생활공감정책을 발굴·제안하고 정책 모니터활동을 수행하는 생활 공감 주부모니터단 활성화 도모 :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 2
-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편성

◇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예산조정(p82~83)

○ 아동의 욕구와 가구연건에 맞추어 신체/건강, 인지/언어, 정서/ 행동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 :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지침 ○ 인건비 인상 및 사업량 증가에도 보상금, 보험료, 프로그램 운영 비를 감액하여 인건비와 예방 접종비를 증액하는 등 예산을 효율 적으로 활용

◇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/ 증 15,100천원(p83)

-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난방비 지원 : 한부모가족지원법
- 도비 변경으로 증액편성

◇ 아이돌보미 지원 / 증 42,526천원(p83~84)

-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이하, 0세~만12세 아동이 있는 대상가정 에 월 40시간 아이돌보미 파견 :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
- 국·도비 변경으로 확정된 예산 편성

◇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조정(p84)

- 센터 종사자 4명 인건비 및 운영비, 방문지도사 11명(한국어, 부모교육, 자녀생활서비스) 운영사업: 다문화가족지원법
- 기금과 도비 변경으로 확정된 예산 편성 : 군비 감액 도비 증액

◇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/ 증 657천원(p84)

- 만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: 입양 특례법 제35조
- 지원 기준 증가에 따른 국비 군비 증가

◇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/ 증 2,999천원(p85)

-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양육비 지원 : 입양특례 법 제35조
-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국비 군비 증가

◇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/ 증 71,100천원(p85)

- 지역아동센터 15개소 난방비 15,000천원, 종사자 수당 30,400천원, 운영비 25,700천원 등 증액: 아동복지법 제59조
- 국·도비 보조금 신규 및 증감 편성

◇ 아동위원 활동비 / 증 2,900천원(p85)

- 거창군 아동위원 29명 활동비 지원 : 아동복지법 제14조
- 1회 추경 미반영된 부족분 분

◇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지원 / 감 2,400천원(p85~86)

-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그룹홈 운영과 종사자 수당 지원 : 아동복지법 제50조
- 종사자 인원 변경으로 수당이 변경되어 도비 보조금과 군비 감액

◇ 입양 축하금지원 / 증 1,000천원(p86)

-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 가정에 축하금 지원 : 입양특례법 제35조 및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
- 도비 보조금과 군비 신규 편성

◇ 만 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/ 증 2,700천원(p86)

-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만13세 이상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사 업:입양특례법 제35조 및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
- 도비 보조금과 군비 신규 편성
- ◇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감 86,616천원(예산서 p86)
 - 국공립·법인 등의 시설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: 영유 아보육법 제36조

-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인건비지원(국공립6, 법인1, 법인 외 2)
- -시간 연장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
- 국·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편성

◇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 도비 변경 / 중 46천원(p87)

◇ 가정양육수당 지원 / 감 2,023,172천원(p87)

- 어린이집을 미 이용 0세~5세 아동을 위하여 양육수당 지원 : 영 유아보육법 제36조
- 국·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편성

◇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/ 증 63,276천원(p87)

- 공공형어린이집 6개소 운영비 지원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
- 국·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

◇ 영유아 보육료 지원 / 증 690,048천원(p87~88)

- 시설이용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
 - 만0~5세 보육료 : 무상지원
 - 만0세:394천원, 만1세:347천원, 만2세: 286천원, 만3~5세:220천원
 - 기본보육료 : 만0~2세 영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정부미 지원시설 361천원(만0세 기준)
- 국·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편성

◇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/ 감 1,068천원(p88)

-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비 지원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
- 국·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편성

◇ 5세 누리과정 지원 / 증 5,487천원(p88)

- 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23개소 운영비 인건비 지원 : 영유 아보육법 제36조
-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편성

◇ 비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/ 감 36,298천원(p88)

-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
-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편성

◇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/ 감 466천원(p88)

-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학무모들에게 수당 지 원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
- 국비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편성

◇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/ 증 2,640천원(p89)

- 사회복지법인어린어집(동그라미 어린이집) 운영비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
- 2013년 신규사업 국비와 도비 예산 편성

◇ 의료급여 관리사 / 증 4,057천원(p90)

-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정 의료 이용유도, 사례관리 등 전 문적·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2명 : 의료급여 법 시행규칙 제2조의2
- 인건비 부족분 국·도비 증액에 따라 증액편성

◇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/ 증 12,244천원(p90)

- 장애인 보장구 급여, 요양비, 본인부담금보상금 등 : 의료급여법
- 국비와 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

□ **행정과**(예산서 P93~94)

<세출예산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50,339,111	50,240,110	99,001	0.20
행정의 효율성 강화	4,894,528	4,795,527	99,001	
행정운영경비	43,795,620	43,795,620	0	

○ **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7,700만 1 천원이 증액(0.20%)된 503억 3,911만원 1천원으로 편성.

◇ 신년 해맞이 축제행사 / 증 5,000천원(p93)

- 군민 안녕과 화합을 위한 새해 감악산 해맞이 행사경비부족
- 내실 있는 행사운영을 위하여 5백만원 증액
- ※ 폭설대비 안전계획 사전수립 시행

◇ 선거관리 부담금 / 증 74,001천원(p93)

○ 「공직선거법」에 227조에 따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, 홍보, 단속사무 등 관리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

◇ 출향인 인적 네트워크 DB구축 / 증 20,000천원(p93)

○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출향인 관리를 위해 전산개발비 확보

◇ 공무원보수 / 재원 변경(p94)

○ 분권교부세 편성에 따라 군비 조정

□ **창조정책과**(예산서 P97~99)

<세입예산> 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1,655,365	1,023,780	631,585	61.69
세외수입	12,500	0	12,500	
국도비보조금	1,642,865	1,023,780	619,085	

○ **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6억 3,158 만 5천원이 증액(61.69%)된 16억 5,536만 5천원으로 편성.

<세출예산> 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17,207,231	12,930,646	4,276,585	33.07
평생학습지원	882,810	665,310	217,500	
창조전략	3,680,604	80,604	3,600,000	
창조사업	3,069,474	3,049,474	20,000	
산업투자유치	5,940,409	5,501,324	439,085	

○ **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42억 7,658만 5천 원이 증액(33.07%)된 172억 723만 1천원으로 편성.

◇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/ 증 130,000천원(p97)

- 4050세대들의 직장인 자격교육을 통해 취업과 창업기회 확대, 평 생학습강사POOL을 확대하기 위한 캠퍼인 및 박람회
- 2013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지원사업 공모 선정, 국비 130 백만
 원 확보, 분담금 3,900천원 운영비 126,100천원 편성

◇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/ 증 75,000천원(p97)

-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개발, 건전한 여가활동, 학력신장 등 주5일 수업제 정착과 지역사회 학습울타리 조성
- 2013년 교육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공모 선정, 국 비확보

◇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/ 증 10,000천원(p97)

- 창조발전소에서 2013년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임원진 40여명을 대 상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 구성, 각 분야별 학습동아리 컨설 팅, 전문가위촉 등 서포터즈 양성
- 2013년 경상남도 평생학습활성화사업공모 선정되어 도비가 경남 발전연구원으로 교부 후 군 세입에 편성되어 실제는 군비로 편성

◇ 제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/ 증 2,500천원(p97)

- 충북제천시 일원에서 홍보·체험부스, 무대공연(3팀), 사례발표, 전 시관 등 운영
- 박람회참가에 따른 도비가 경남발전연구원으로 교부 후 군 세입에 편성되어 실제는 군비로 편성

◇ 법조타운 조성 / 증 3,600,000천원(p98)

- 2014년도 대법원 거창지원 이전 용역비 예산편성에 따른 지원 이전시기 가속화에 따라 거창지원 이전부지 및 성산마을 집단이주 단지 부지 사전매입
-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이전 토지매입 16,500㎡ 25억원, 성산마을 이주 토지매입 6,301㎡ 11억원 소요
- ※ 공유재산 취득절차, 가격산정 방법, 예상되는 문제점 등 세부계획 설명이 필요함.

◇ 창조거리 활성화 시범운영 / 증 20,000천원(p98)

- 차 없는 거리 지정, 거리공연, 퍼포먼스, 예술문화 행사, 거리조명·포토 존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
- ※ 차 없는 문화거리 시범운영 예산이 삭감되고 창조거리 활성화 시 범운영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유와 세부내용 설명이 필요함.

◇ 승강기업체 설비투자 보조금 / 증 465,285천원(p98)

- 코리아 엘텍에 대한 설비투자 지방투자촉진(수도권기업 이전)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설비투자금액의 22%에 대하여 1차 보조금 70%지급하고 투자 완료 후 30% 지급하는 제도.
- 지원기준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-84호「지방자치단체의 지 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
-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체가 국·도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승강기산업 추진 과목에서 지방투자촉진 과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

□ **재무과**(예산서 P107)

<세입예산> 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264,117,434	247,031,612	17,085,822	6.92
세외수입	34,224,481	19,727,868	14,496,613	
지방교부세	202,586,203	200,765,994	1,820,209	
조정교부금	9,044,000	8,275,000	769,000	

○ **제2회 추경 세입에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170억 8,582만 2천 원이 증액(6.92%)된 2,641억 1,743만 4천원으로 편성.

<세출예산>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3,341,985	2,908,985	433,000	14.9
재산관리	2,263,125	2,135,125	128,000	
재무활동	417,000	112,000	305,000	

(단위 : 천원)

○ **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4억 3,300만원이 증액(14,9%)된 33억 4,198만 5천원으로 편성.

◇ 거창읍 내부정비 및 천정보수 / 증 50,000천원(p103)

- 창문수리, 천정보수, 사무공간 확장 등
-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과 직원의 업무효율 제고

◇ 웅양면 청사환경 정비 / 증 30,000천원(p103)

- 정문 계단정비, 화단정비, 쉼터조성
- 청사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제공

◇ 남상면 석면지붕 개량 및 비가림 / 증 25,000천원(p103)

- 창고 석면 지붕개량, 청사 출입구 비가림 설치
- 청사 환경을 정비하고 이용객에게 편의제공

◇ 가북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 / 증 20,000천원(p103)

- 옥상 방수, 면장실 방수, 정문 출입구 방수
- 우수기 누수 방지로 쾌적한 청사 환경제공

◇ 컬러 프린트기 구입 / 증 3,000천원(p103)

○ 북상면 컬러 프린트기 1대 신규구입

◇ 청사정비 차입금 이자상환 증 5,000천원(p103)

○ 거창읍사무소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 일시상환, 연이율 3%

◇ 청사정비 차입금 원금상환 / 증 300,000천원(p103)

-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일시상환
- 원금잔액 4억원을 일시 상환하여 건전재정운영에 기여

□ **민원봉사과**(예산서 p107)

<세입예산> 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52,006	31,527	20,479	64.96
국고보조금	29,806	22,527	7,279	
도비보조금	22,200	9,000	13,200	

○ **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2,047만 9천원이 증액된 5,200만 6천원으로 편성.

<세출예산> 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542,079	521,600	20,479	3.93
고품질 지적행정	205,385	184,906	20,479	

○ **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2,047만 9천원이 증액(3.93%)된 5억 4,207만 9천원으로 편성.

◇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/ 증 20,479천원(p107)

- 지적도면과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고, 종 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·대체하기 위하여 인건 비 및 측량수수료, 홍보물품 구입 등 소요예산임.
-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웅양 신촌지구 선정, 국도비 사업
- 지원근거 : 『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』

□ **문화관광과**(예산서 P111~113)

<세입예산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1,902,481	1,818,481	84,000	4.92
국고보조금 등	649,496	593,496	56,000	
도비보조금	1,252,985	1,224,985	28,000	

○ **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8,400만원이 증액 (4.92%)된 19억 248만 1천원으로 편성.

<세출예산>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11,923,511	11,793,911	129,600	1.10
문화예술진흥	2,541,308	2,547,708	△ 6 , 400	
관광진흥	5,333,896	5,328,896	5,000	
전통문화보존전승	2,154,771	2,024,771	130,000	
도서관관리	393,870	392,870	1,000	

○ **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1억 2,960만원이 증액(1.10%)된 119억 2,351만 1천원으로 편성.

◇ 국제연극제 개최지원 / 감 6,400천원(p111)

○ 도비 지원예산 감액

◇ 거창관광홍보 / 증 5,000천원(p111)

- 제1회 거창 향기전 개최 (전시 및 체험행사)
- ※ 행사주체와 행사배경 등 세부계획 설명이 필요

◇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/ 증 80,000천원(p112)

- 국가지정문화재 보수·정비 사업 중 정온선생 가옥 중문채 보수사 업 추가 확정, 국 도 군비 증가
-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설계승인 후 착공

◇ 전통사찰 보존 정비지원 / 증 50,000천원(p112)

- 전통사찰이 재해 재난으로 훼손되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여 연 수사 석축정비 사업을 추진
- 도비 지원 사업이며 경남도 설계승인 후 시공
- ※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시공토록 주문

◇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/ 증 1,000천원(p112)

○ 북스타트 특강 운영 및 북스타트 꾸러미 구입 도비지원 사업

□ 보건소(예산서 P117~122)

<세입예산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3,216,864	3,193,521	23,343	0.73
국고보조금 등	2,244,878	2,240,310	4,568	
도비보조금	971,986	953,211	18,775	

○ **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2,334만 3천원이 증액(0.73%)된 32억 1,686만 4천원으로 편성.

<세출예산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11,011,227	10,965,089	46,138	0.42
군민건강증진	9,840,845	9,794,707	46,138	

- **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4,613만 8천원이 증액(0.42%)된 110억 1,122만 7천원으로 편성.
- ◇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전 신축을 제외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또는 사업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을 증감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◇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/ 증 5,000천원(p117)
 - 남상·남하면보건지소, 지산·도리보건진료소 등 4개소 이전신축
 - 남상과 남하 보건지소는 각각 10,000천원씩 감액, 지산보건진료소 는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서 25,000천원 증액

- 아스팔트 싱글 지붕을 청기와로 변경
- 앞마당을 자갈포설 마감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
- O 도리보건진료소는 페시브 건축공법 적용으로 전문감리가 필요하여 시설비에서 6,324천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함

◇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/ 증 2,090천원(p118)

-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보철(전부 혹은 부분틀니) 보급 : 국민건강 증진법 제18조(구강건강사업), 구강보건법 제15조
- <u>기금</u>·도비 확정으로 사후관리비지원금 추가 편성

◇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/ 증 20,000천원(p118)

- 관내 어르신 틀니(전부 혹은 부분틀니) 보급 : 구강보건법 제3조 및 제7조,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
- 도비 변경 내시, 어르신 틀니 보급 확대

◇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/ 증 22,000천원(p118)

- 장애인에게 틀니지원, 보철지원, 레진치료 등 지원 : 장애인복지 법 제6조, 구강보건법 제15조
- 도비 변경내시 :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자 증가

◇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/ 감 13,410천원(p118)

-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지원, 보장구구입비, 간병비, 호흡기 보조기·기침유발기대여료, 만성신부전요양비 등 지원
- <u>기금</u>과 도비 변경내시 : 이월 예탁금 감 조정

◇ 미숙아,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/ 감 7,248천원(p119)

-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 의료비 지원 : 모자보건법 제10조
- 기금·도비 변경내시 :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

◇ 선천성 대사이상검사, 환아관리 / 감 4,094천원(p119)

-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(6종)의 검사비 1인 당 20,000원 지원 : 모자보건법 제3조
- 기금·도비 변경내시 :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발생 감소

◇ 출산지원 보조 / 증 10,000천원(p119)

- 셋째아 이상 5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 :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 제5조
- 도비 변경내시 : 셋째 출생아 20명 증가

◇ 산후조리비용 지원 / 증 16,000천원(p120)

- 산모 1인 기준 50만원씩 지급 :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
-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 : 32명

◇ 에이즈 및 성병예방 / 감 600천원(p120)

-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,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, 성병검 진 및 치료비 :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예방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기금·도비 변경내시

◇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/ 증 16,200천원(p120)

- 부양가족이 없는 한센인중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 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한센인에게 매월 150 천원씩 생활지원금 지급: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
- 국비 변경내시

◇ 국가예방접종 사업 / 증 감 각각 20,000천원(p121)

- 예방접종등록관리 인부임 및 약품구입비,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 방사업비,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
-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를 감액하고 병의원 접종비를 증액함. 기금과 도비지원 사업

◇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/ 예산조정(p121)

-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강사료, 프로그램 참여자 식비 등 지원 : 정신보건법 제13조
-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, 참가대 식대 13,720천원을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,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1,400천원은 면지역 거주자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 지급이 필요하여 부기내용 변경. 기금지원 사업.

□ 체육청소년사업소(예산서 P125~126)

<세입예산> 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1,798,331	1,176,456	1,875	0.16
도비보조금	82,372	80,497	1,875	

○ **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187만 5천원이 증액(0.16%)된 17억 9,833만 1천원으로 편성.

<세출예산> 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계	7,662,010	7,637,010	25,000	0.33
체육진흥	5,815,759	5,790,759	25,000	
청소년건전육성	1,644,723	1,644,723	0	

○ **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** 기정예산 대비 2,500만원이 증액 (0.33%)된 76억 6,201만원으로 편성.

◇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 / 증 25,000천원(p125)

-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 : 거창군체 육진흥조례 제8조
- K-리그 프로축구 경남FC 경기 유치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과 행 사운영비 예산 반영

◇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/ 예산조정(p125)

- 취약계층 학습지원, 체험활동 등 종합서비스 제공 :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
- 도비지원으로 군비 감액(도1,875, 군△1,875)